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2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김태욱, 문희성, 강혜순
이명녀, 정재환,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안영호
박경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일상생활과 역사, 문화가 축적된 골목공간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관광·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골목문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마. 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주민참여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10 (제278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4. 관계법령

가. 「문화기본법」 제5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10. 31. ~ 11. 06.(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골목공간에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 및 공동체 정체성 회복과 주민참여 기반의 골목문화 재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문화”란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의 역사, 예술, 상권 등을 배경으로 골목공간에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생활문화자산을 말한다.
2. “골목문화 기록”이란 골목문화를 구술, 사진, 문헌, 지도 등의 방식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골목문화 재생”이란 골목문화 기록을 기반으로 골목공간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되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이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이 문화·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예산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조사, 기록,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교육·관광 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방안
3. 주민 참여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방안
5. 재정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기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조사, 구술채록, 사진기록, 공간지도화
2. 주민 참여형 기록학교 운영 및 기록자 양성
3. 기록물의 전시,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한 공간 재생
2.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제6조(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목문화 교육 프로그램
2. 골목문화 해설사 양성 및 운영
3.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도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제안 및 공모 방식의 재생사업
2. 주민협의체, 마을기록단 구성 및 운영
3. 지역 인력을 활용한 해설, 기획 등 콘텐츠 운영

③ 구청장은 시범구역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 교육,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선정 및 기록, 보존 방식
2. 시범구역 지정 및 프로그램 기획

3. 교육·관광 콘텐츠 활용 방안 등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31.>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 불가

3. 작성자

소 속: 문화관광과

이 름: 박윤경

직 급: 행정7급

연락처: 052-290-3662